

보도 시점 2026. 1. 21.(수) 12:00
(2026. 1. 22.(목) 조간) 배포 2026. 1. 21.(수) 09:00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 시행

- 「디지털 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6.1.22부터 시행
 - 영향평가부터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까지, 사회·경제 전반에 포용성 확대
 -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과 단계적 시행 유예 적용
- 【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되었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 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①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②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하여 지난해 1월 제정되었다.

* ① 「디지털 포용법안」(24.6.17., 고동진 의원 대표 발의), ② 「디지털 포용 증진 법안」(24.8.13., 박민규 의원 대표 발의), ③ 「디지털 포용법안」(24.9.26., 김장겸 의원 대표 발의)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②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에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을 보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 5]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포용법」에서는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 ①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 단말기의 제조 ②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무장벽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조 중 택1

한편,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제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우선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26.7.22~),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27.1.22~)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시행령 부칙 제3조).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제도기간(‘26.1.22~‘26.4.22)을 두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27일 「지능 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부여한 1년의 제도기간(‘25.3.27~‘26.3.27)도 「디지털 포용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적용된다.

※ 기존 「지능 정보화 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디지털 포용법」으로 이관

이외에도 △실태조사(정가수시)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 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에서부터 연구 개발(R&D)·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고 「디지털 포용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 포용정책팀	책임자	팀장	권오민 (044-202-6150)
		담당자	사무관	이하성 (044-202-615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